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6,548호 1999. 9. 9

개정이유

정부계약에 있어서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2001년부터 부대입찰 제를 없애는 등의 규제완화를 통하여 입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보호를 위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공사공동도 급의 대상을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공사계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입찰을 할 때에 하도급금액, 하수금인 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제시하도록 하는 부대입찰제를 폐지되며, 하수급업체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그 시행일을 2001년 1월 1일로 함(현행 제19조삭제 및 부칙 제1항).
- 나. 중소기업보호를 위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전문건설공사의 범위를 5천만 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에 중소기업우수제품인증마크(GQ)를 받은 물품을 추가함(영 제26조).
- 다. 종전에는 30억원 미만인 소규모공사에 대하여는 예정가격의 90퍼센트 이상 100

퍼센트 미만으로 입찰한 자중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는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여 소규모공사에 대하여도 입찰가격과 계약이행능력을 종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적격심사낙찰제를 적용하도록 함(영 제42조).

- 라.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당해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시·도 지역업체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는 공사의 범위를 78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축소하여 공사계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되, 지방중소업체의 준비기간등을 감안하여 그 시행일을 2001년 1월 1일로 함(영 제72조).
- 마. 대형공사의 경우 공사에 관한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 등 전과정을 종합 관리하는 자와 관리업무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사업관리제도를 도입함(영 제91조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 중 “일괄입찰 및 실시설계·시공입찰”을 “일괄입찰”로 한다.

제12조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4호 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 보호 및 기업 간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과 유업종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만이 생산하고 있는 물품

2.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물품으로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에 부치는 물품

제14조제1항 본문중 “ 및 동 물량에 대한 단가의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설명서 기타 총리령이”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로 하고, 동항 단서중 “고시금액”을 “50억 원”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고시금액”을 “50억원”으로, “설계서, 물량내역서 및 동 물량에 대한 단가의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설명서”를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 · 제3호 및 동조제5 항 내지 제7항중 “고시금액”을 각각 “50억 원”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중 “제42조제1항 및 제5항과 제43조”를 “제42조제1항 및 제43조”로 하고, 동조제4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및 동항제1호 · 제6호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 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8.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 고시한 물품을 제조 · 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제2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7호를 삭제하며, 동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정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보증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10.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 고시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 · 구매할 경우 제26조제1항제4호마목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기술”을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 고시된 신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전력기술”로 하고, 동항제5호중 “전문공사”를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7천만원”으로 하며, 동항제6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7호 마목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항제8호라목중 “제조 · 구매하는 경우”를 “제조 · 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 임대하는 경우”로 하며, 동호바목중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 · 구매하는 경우”를 “장애인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 또는 용

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로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품질경영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보증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의 사용을 인증받은 제품 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제품으로서 그 제품 또는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마.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할 경우

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우선구매 등의 대상으로 고시한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제35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중 “고시금액”

을 각각 “50억원”으로 한다.

제3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4호를 삭제하며, 동조제15호중 “대안입찰, 일괄입찰 또는 실시설계·시공입찰등”을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등”으로 한다.

6. 낙찰자결정방법(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통보예정일을 포함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업종별공제조합”을 “공제조합”으로, “공업발전법”을 “산업발전법”으로, “한국전력기술인협회”를 “전력기술인단체(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한다)”로, “환경설비에 대하여”를 “환경설비의 하자보증을 행하는”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낙찰자로”를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로 하며, 동항 단서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각 중앙판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계약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47조제1항 단서중 “제42조제1항 단서”를 “제42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49조제1호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50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8항중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를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16”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감액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51조제1항 전단중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상의”를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

전의 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1.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당해 공사의 계약상의 시공의무이행(하자보수이행을 포함한다)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 납부하는 방법

3.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당해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5조제1항 단서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7항 본문중 “감독을 행하는 자의 검사로”를 “감독을 행하는 자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로 한다.

제56조제1호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5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55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기성검사를 갈음 하는 경우

제60조 본문중 “그 목적물”을 “전체 목적물”로 하고, 동조 본문 및 단서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61조제3항 단서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본문 및 단서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

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 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6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 및 동항 제1호·제2호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 각호의 방법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금액조정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기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5조제4항중 “감액을 하지 아니한다.”를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로 하고, 동조제6항중 “총

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규정된 공동계약의 경우로서”를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이고”로 하며, 동조제4항 중 “공동수급체의 구성원간에는”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간에는”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전단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인수한 때에는”을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으로 하며, 동항 후단중 “제조 또는 공사”를 “공사·물품 또는 용역 등”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중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을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0호중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을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으로 하며, 동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 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하여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76조제2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제6항 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통보를 받거나 관보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를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통보를 받거나 관보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로 하고, 동조제8항 본문중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을 “지방재정법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한”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제재받은 자”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로 한다.

제76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⑪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통보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78조증 “대안입찰, 일괄입찰 또는 실시설계·시공입찰”을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한다.

제79조제1항제2호증 “대안입찰, 일괄입찰 또는 실시설계·시공입찰”을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하고, 동항제3호증 “설계서(총공사에 대하여 설계가 완성된 것에 한한다)”를 “설계서(총공사에 대한 기본설계서와 실시설계서를 말한다)”로, “신기술등에 의한”을 “신기술·공기단축 등이 반영된”으로, “설계의 추정가격”을 “설계서상의 가격”으로, “공법으로”를 “방법(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이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한다)으로”로 하며, 동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입찰안내서”라 함은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

기 전에 숙지하여야 하는 공사의 범위·규모, 설계·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기타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제80조제1항 단서중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증 “대안입찰, 일괄입찰 또는 실시설계·시공입찰”을 각각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한다.

제84조의 제목중 “일괄입찰등”을 “일괄입찰”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중 “일괄입찰 또는 실시설계·시공입찰”을 각각 “일괄입찰”로 하며, 동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2.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 용역업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일 것

제85조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본설계로 대안입찰서를 제출하

는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하는 공종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5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5. 입찰안내서에 정하여진 지침에 따라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 적격자가 작성한 실시설계도서

제8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7 항중 “대안입찰서 ·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 또는 실시설계 · 시공입찰서”를 “대안입찰서 ·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로 한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당해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의 적격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원안입찰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 설계 점수를 당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원안설계서(기본 설계서 및 실시설계서를 포함한다)와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를 제출받은 때

2. 일괄입찰의 경우로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때

제8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안입찰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대안입찰금액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금액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인 대안입찰 모두를 낙찰적격입찰로 선정한다. 다만,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중에서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개의 대안을 선정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로 대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원안입찰자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중에서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실시설계작성자로 결정하며, 실시설계로 대안을 제출받은 경우에

는 원안입찰자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중에서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기준에 합
당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85조제5항 및 제87조제2항·제5항의
규정은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의
낙찰자 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7조제3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
적격자로 결정된 입찰자의 입찰금액”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 내지 제8항을 각각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
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결정에
있어서 공사의 시급성 기타 특수한 사정
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적격
자로 하여금 당해 공사를 공정별 우선순
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설계서를 작성
하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
계자문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
자로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
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게 하

기 전에 총공사와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
게 하여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
원은 총공사에 대한 최종실시설계적격통
지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계약을 체결한 자로 하여금 산출내역
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의 산출내역서
와 대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
초의 계약금액은 이를 증액할 수 없다.

⑧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
원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서를 우선 제출
하여야 하는 공종의 범위 및 제출기한,
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입찰안내서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가 입찰전에 미리 이
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8조를 삭제한다.

제89조제1항중 “제87조 및 제88조”를 “제
86조제2항 및 제87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1조제1항중 “대안입찰, 일괄입찰 또는
실시설계·시공입찰”을 “대안입찰 또는 일
괄입찰”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제85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제85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건설사업관리계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형공사중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계약함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의 특성·규모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 조사·설계·시공·감독·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관리하는 업무(이하 “건설사업 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와 건설사업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체결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94조를 삭제한다.

제2조제3호, 제6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31조 단서, 제39조제2항, 제44조제1항·제2항, 제46조 단서, 제53조제2항, 제68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 제71조 및 제93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제17조제3항, 제24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1항 단서, 제34

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39조제3항, 제48조제1항 및 제63조제2항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6조제14호 및 제7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 후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실시설계·시공입찰의 방법으로 집행될 대형공사 등의 발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시공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하기로 공고된 대형공사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784호 전력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기술인협회는 제3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전력기술인단체로 본다.